

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. 6.

인 천 광 역 시 장

■ 중소기업육성자금(10,450억 원)

사업명	지원규모	협약기관	지원내용
경영안정자금	10,000억 원	-	-
① 이자차액보전 지원	9,100억 원	16개 협약은행	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
②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	500억 원	신용보증기금	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
③ 협약보증 지원	400억 원	기술보증기금	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
구조고도화자금	450억 원	-	-
④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			
기계·공작장보자금	420억 원	市금고, 전대약정체결은행	I 그룹(기준대출금리, 변동)
벤처창업자금		기술보증기금,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	II 그룹(기준대출금리-0.5%p, 변동)
재해기업자금	30억 원	市금고, 전대약정체결은행	IV 그룹(무이자용자, 고정)

* 경영안정자금 중 이자차액보전지원, 구조고도화자금은 은행에서 담보(부동산, 보증서, 신용 등)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,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.

* 기계공작 및 벤처창업자금 기업대출금리 하한선 : 0.8%

■ 경영안정자금(10,000억 원)

① 이자차액보전 지원(9,100억 원)

1. 지원개요

구분	세부지원	지 원 대 상	지원한도	지 원 내 역	
일반지원	일반기업	일반업종, 관광업종(관광공사 추천)	10억 원	이자보전(기본지원)	
우대지원	기타우대(지정서 및 선정서 등)	FTA인증 수출기업, FTA활동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,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, 가족친화기업,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, 벤처기업, 여성친화기업	1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우대지원율 0.5%)	
		유망중소기업, 이클라우드공장 선정기업, 스마트공장도입기업, 제조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	15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우대지원율 0.5%)	
		비전기업	30억 원		
		중견성장사다리기업,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(18년 수상자부터 적용)	50억 원		
		여성기업	1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우대지원율 0.55%)	
		장애인기업	1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우대지원율 0.7%)	
	산업핵심기업	(사)합계하는인천사람들(추천서)	2천만 원	이자보전 (기본+우대지원율 0.5%)	
		해외유통기업	5~1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5%)	
		우리시 전업기업	50억 원		
		신규산업(강화, 서운, I-FOOD, IHF) 입주(예정)기업	20억 원		
		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	10억 원		
		재해기업	15억 원		
		수출기업	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	3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2%) * 은행 금리우대 별도
		창조경제 혁신기업	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	5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5%)
고성장기업 I	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% 이상인 기업	3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5%)		
고성장기업 II	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액 100명 이상기업이며,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% 이상인 기업	3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3%)		
고용창출기업 I	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15% 이상인 기업	30~5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1.0%)		
고용창출기업 II	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액 100명 이상기업이며,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5% 이상인 기업	30~5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5%)		
고용창출기업 III	일자리 창출 우수기업	30~5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5%)		
고용창출기업 IV	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% 이상	30~50억 원	이자보전 (기본+추가지원율 0.5%)		

* 대출기간 : 1년(반기일시상환), 2년(반기일시상환), 3년(6개월거치 5회 분할상환)

(단, 합인사 : 4년, 수출기업 : 6개월, 1년(반기일시상환))

* 고용창출기업 I~IV : 최근 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 원 이내, 50명 이상 기업 40억 원 이내

* 자금별 지원대상(지원제한 대상) 및 구비서류는 안내문(별첨) 참조

2. 이차보전 지원율

구분	내용				
기본	-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				
	기업 대출금리	지원이자율	기업 대출금리	지원이자율	
	1.01% - 1.50%	0.2%	5.01% - 5.25%	1.2%	
	1.51% - 2.00%	0.3%	5.26% - 5.50%	1.3%	
	2.01% - 2.50%	0.4%	5.51% - 5.75%	1.4%	
	2.51% - 3.00%	0.5%	5.76% - 6.00%	1.5%	
	3.01% - 3.50%	0.6%	6.01% - 6.25%	1.6%	
	3.51% - 4.00%	0.8%	6.26% - 6.50%	1.7%	
	4.01% - 4.33%	0.9%	6.51% - 6.75%	1.8%	
	4.34% - 4.66%	1.0%	6.76% - 7.00%	1.9%	
	4.67% - 5.00%	1.1%	7.01% -	2.0%	
최종	- 기본지원율과 우대(추가)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				
	기 본 지 원 율	+	우 대 지 원 율	=	합 산 지 원 율
	*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(차등지원율)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(추가)지원율을 합산				

3. 기타조건

- 대출금리 : 시중 자율금리 (고정 및 변동 등 대출관련 세부조건은 기업체 자율 선택)
- 대출신청기간 :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- 협약은행 : 총16개 은행
 - ▶ 기업은행, 씨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KEB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수협은행, 부산은행, JB전북은행, 산업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, 수출입은행(수출자금), 새마을금고

4. 지원결정 취소대상

- 지원결정 후 폐업, 관의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
-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5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1. 1. 11 ~ **한도 소진 시까지**
- 신청방법 : **온라인** (비즈오케이 접속[http://bizok.incheon.go.kr] ▶ 기업지원 ▶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)
 - * **관할업 신청 및 접수 : 비즈오케이에서 신청불가, 인권관광공사 문의 ☎(032)721-4321**
- 유의사항 : **1개의 접수페이지에서 우대항목 체크에 따른 지원자금 체크, 신규/연장신청 체크**

신규신청	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였거나 만기가 지난 기업
연장신청(재대출)	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업
연장신청 유의사항	- 만기일 1개월 전에 신청가능
	- 만기일 1개월 전 연장신청이 아닌 경우 반려되며 이후 재신청 필요 (조기상환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만기1개월전이 아니라라도 신규신청은 가능함)
	- 연장신청건은 만기가 화요일~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사전 지원통보
	-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, 1회에 한정된 우대지원은 연장지원 불가
	- 기존 상환중인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하고 전액한도를 받는 기업은 신규신청으로 체크

- 신청문의 :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☎(032)260-0624, 0623, 0622, 0621

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(500억 원 내외)

1. 지원대상 :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 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

- *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

2. 지원내용

협약기관	지원항목	지원내용
신용보증기금	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보험료 :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80% (지원한도 5백만 원 이내, 보험료 10% 할인 우대) ■ 보험(보장)금액 : 최대 15억 원 내외 ■ 지원(가입)기간 : 1년

- * 시(市) 및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
- * 지원기업이 휴·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,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

3. 지원제외 대상

- 부동산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-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4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1. 1. 11 ~ 한도 소진 시까지
 - * 접수개시일은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
- 신청서류 :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
- 신청문의 : **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☎(032)450-1546, 1541, 1531, 1537**

③ 협약보증 지원(400억 원)

1. 지원대상 :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 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

구분	지원대상
소재·부품산업 영위기업	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소재·부품업종 영위기업
기술혁신 선도형기업	①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②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(이노비즈기업)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할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
코로나19피해기업	코로나19 피해기업
항공물류산업	항공물류산업 영위기업
물산업	「물기업 육성 지원사업 업무협약」 관련기업
특허권 사업회기업	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회기업

*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

2. 지원내용

협약기관	지원항목	지원내용
기술보증기금	보증서 발급 (운전자금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증한도 : 5억 원 이내 ■ 보증조건 : 1년(보증비율 100%, 보증료 감면 0.2%p)

3. 지원제외 대상
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-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4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1. 1. 11. ~ 한도 소진 시까지
* 접수개시일은 기술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
- 신청서류 :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
- 신청문의 : [기술보증기금\(인천지점 ☎\(032\)830-5600\)](tel:032-830-5600), [인천중앙지점 ☎\(032\)420-3500](tel:032-420-3500), [부평지점 ☎\(032\)509-1700](tel:032-509-1700)

■ 구조고도화자금(450억 원)

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(450억 원)

1. 지원개요 (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)

지원 규모	구분	지 원 사 업	업체당 융자한도	용 자 기 간	대출금리	
420억 원 (업체당 총 36억 원 이내)	기계 구입 자금 (업체당 30억 원 이내)	일반	연계융자금 (최대2억 원)	10억 원	8년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 3년(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)	기준대출금리 (I 그룹)
		우대		스마트공장도입	20억 원	8년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 3년(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)
	공장 확보 자금 (업체당 36억 원 이내)	공장	연구소	30억 원	8년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	기준대출금리 (I 그룹)
				10억 원	8년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	
	주차장 확보 자금 (업체당 5억 원 이내)	국가산단 주차장설치	5억 원	8년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	기준대출금리 (I 그룹)	
			7억 원	8년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		
	벤처창업 자금 (업체당 7억 원 이내)	기계구입자금	7억 원	8년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	기준 -0.5%p (II 그룹)	
운전자금		3억 원	5년(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)			
30억 원	재해 자금	재해기업	2억 원	5년(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)	무이자 (IV 그룹)	

* 자금별 지원대상(지원제외 대상) 및 구비서류는 안내문(별첨) 참조

2. 기업 대출금리

구분	지원자금	대출금리	21년 1분기 대출금리
I 그룹	기계구입자금, 공장확보자금 (변동)	기준대출금리	1.7%
II 그룹	벤처창업자금 (변동)	기준대출금리-0.5%p	1.2%
III 그룹	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(변동)	기준대출금리+0.2%p	1.9%
IV 그룹	재해기업자금 (고정)	무이자	0%
V 그룹	특별자금 (변동)	기준대출금리-0.9%p	0.8%

* 기준대출금리 : 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에 따라 연동(분기별 변동금리 : 1월, 4월, 7월, 10월)

* 단, 사업별 기업대출금리가 0.8%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업대출금리는 0.8%로 적용함
(2021년 대출분부터 적용, IV 그룹-무이자에는 적용제외)

3. 기타조건

- 대출유효기간 :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)
- 대출은행 :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
 - * 市 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첨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 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

4. 지원결정 취소대상

- 지원결정 후 폐업, 관의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
-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

5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1. 1. 11. ~ **한도 소진 시까지**
- 신청방법 : **온라인** (비즈오케이 접속[<http://bizok.incheon.go.kr>] ▶ 기업지원 ▶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)
- 유의사항 : 기계공장자금은 1개의 접수페이지에서 **지원자금 체크**
- 신청문의 :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☎(032)260-0624,0623,0622,0621

- 별첨 : 1. 2021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문
2. 2021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양식